

공

고

○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-32호

**전파법 위반(준공검사 기한경과)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**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8일

부산전파관리소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

시설자명	허가번호	호출명칭	주소	위반내용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권*재	41-2025-20-0000006	300프*티호	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	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	무선국 허가취소
김*철	42-2025-20-0000021	시*니2호	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	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	무선국 허가취소
정*진	49-2025-20-0000157	재*해상490해*호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	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	무선국 허가취소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청문일자: 2026. 7. 16.(목) 10:00

4. 청문장소: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-17)

5. 참고사항

가.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“의견제출서”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청문(의견제출)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1-974-5192, 팩스051-974-51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